

걱정 뚫! 부담 뚫!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contents

일 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 I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
- II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 III 지원대상기업 심사
- IV 지원대상근로자 심사
- V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 VI 일자리 안정자금 이의신청
- VII 사후관리
- VIII 공동주택의 이해
- IX 영세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강화

I.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

- 1 목적 및 추진경과
- 2 추진체계
- 3 업무흐름도
- 4 '19년도 주요 개선사항
- 5 '18년도 지원 사업(주)에 대한 경과조치



1. 목적 및 추진경과

I.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

❖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 · 영세기업 대상 한시적 지원 필요

1. 목적 및 추진경과

I.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

- 
- | | |
|-------------|--|
| '17.7.16. |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관계부처 합동) 발표 |
| '17.7.17.~ | 9회 관계부처 최저임금 TF 구성·운영 |
| '17.8.21.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안) 국무회의 의결 |
| '17.10.13.~ | 2회 관계부처 최저임금 TF 추가 회의: 사업 추진 관련 쟁점 및 부처 간 이견 등을 조정 |
| '17.11.9. | 경제관계장관회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시행계획(안) 발표 |
| '17.12.6.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예산(2조 9,708억원), 국회통과 |
| '18. 1. 1. | 사업시행에 맞춘 조직, 인력, 전산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으로 차질 없이 사업 추진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산시스템의 단계적 개통, 다양한 접수채널 마련, 초기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전사적 협업체계 구축, 지속적 제도 개선 |
| '18.7.14. | 최저임금인상위원회 '19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 |
| '18.12.8.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예산(2조 8,188억원), 국회통과 |

2. 추진체계

I.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

- ❖ (사업집행 체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수행

고용노동부



- 사업계획 수립, 세부 시행지침 마련 등 제도 총괄
- 예산편성 및 배정 (보조금 교부)
-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수급액 등 강제징수
- (지방노동관서) 관내 사업(주) 홍보 및 교육
-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근로복지공단 (보조사업자)



- 사업 집행(보조금 집행) 및 전산관리
- 사업관리 및 홍보
-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부정수급 적발, 반환명령)



사업주



- 보조금 신청 및 지원
- 변경신청(신청내용 변경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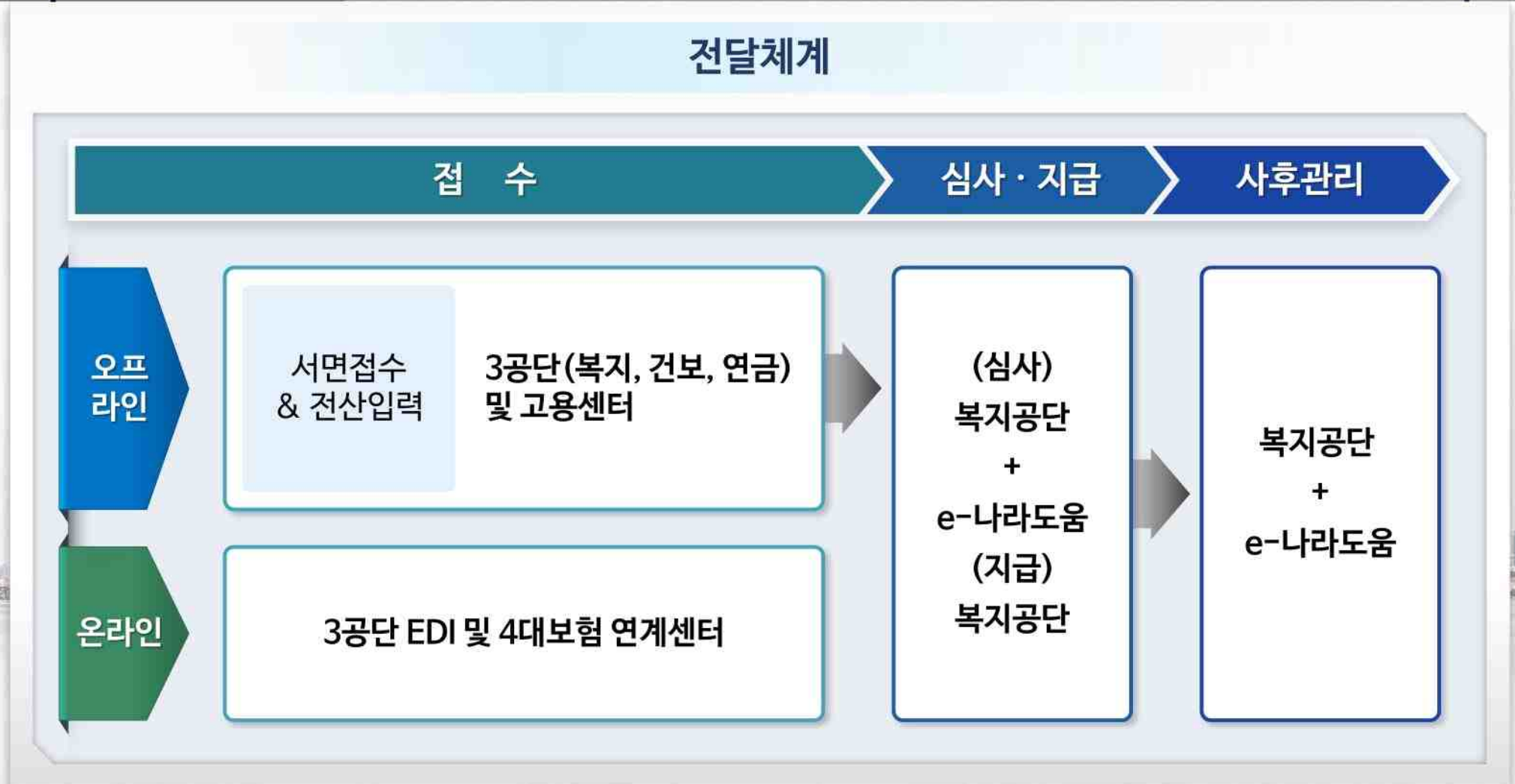


2. 추진체계

I.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19.1.1. ~ 12.31.

전달체계



3. 업무흐름도

I.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

구분	주체	내 용
접 수	사회보험3공단, 고용센터	• (온라인)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 방문·우편·팩스
심 사	근로복지공단	• (1차) 고용보험DB(해당자료) 연계를 통한 요건 검증 - ①30인 미만 ②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③국가 등 공공기관 ④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⑤최저임금 준수 ⑥고용보험 가입 ⑦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⑧사업장 정상운영 ⑨고소득 사업주 ⑩재정지원 사업주 ⑪제재부가금 부과사업주 • (2차)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한 추가 검증 - ①실명확인 ②특수 관계인 ③외국인 등 체류여부
지 급	근로복지공단	• 직접지급 or 사회보험료 대납방식 중 사업주 선택 • 월 1회 지급(매월 15일) (신청 이후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19년 말까지 매월 지급)
사 후 관 리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사, 적발, 반환명령 • (고용노동부) 제재부가금 부과, 강제징수

4. '19년도 주요 개선사항

I.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

◇ 공동접수기관

종 전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센터, 읍·면·동사무소

개 정

-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센터

개정취지

- '18년도에 60만 개소가 넘는 사업장에서 이미 신청이 된 점을 감안하여 읍·면·동사무소 제외

◇ 신청절차 간소화

종 전

- 근로자 입사 시 고용보험 신고와 함께 안정자금 신고 병행

개 정

- 계속 지원 사업장
 - 별도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
- 신규 신청 사업장
 - 최초 신청 이후에는 별도 추가신고 없이 고용보험 DB 기반으로 계속 지원(고용보험 신고서 상 안정자금희망 여부만 체크)
- 체크리스트 폐지

개정취지

- 사업주 신청편의를 고려하여 신청 절차 간소화

4. '19년도 주요 개선사항

I.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

❖ 변경신고 기한

종 전

- 다음달 지급일 이전 7일전까지

개 정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개정취지

- 제출기한 통일

❖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희망서 소급

종 전

- 제출월 전월분부터 지급 가능

개 정

- 일반신청서와 동일하게 지급희망월부터 지급가능

개정취지

- 영세사업주 간편 신청절차 강화

4. '19년도 주요 개선사항

I.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

30인 미만 산정

증 전

- 고용보험 적용단위
 - 하나의 '사업'을 기준으로 산정

개 정

- (예외 추가) 지(점)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채용·해고 등의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조달하는 경우 지원

개정취지

- 소규모 영세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지원대상 월평균 보수 상향

증 전

- | | |
|-----------------|--|
| 상용,
주40시간 미만 |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
| 일 용 | 1일 87,000원 미만 |
| 선 원 | 월평균보수 238만원 미만 |
| 다음연도 정산 | 다음연도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190만원의 12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환수 |

개 정

-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 1일 97,000원 이하
- 월평균보수 259만원 이하
- 다음연도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252만원(210만원의 120%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환수

개정취지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평균보수 기준 상향 조정

4. '19년도 주요 개선사항

I.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

❖ 지원금액 상황

종 전

5인 미만 근로자 • 1인당 최대 월 13만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13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12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10만원

개 정

• 1인당 최대 월 15만원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13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12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10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8만원

개정취지

•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18.10.24.)

❖ 취약계층 지원 강화

종 전

고령자 • 만 60세 이상(300인 미만 지원)

일용근로자 • 월 15일 이상 근무 시 지원

노인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 지원배제

사회적기업
종사자 • 취약계층만 지원

개 정

• 만 55세 이상(300인 미만 지원)

• 월 10일 이상 근무 시 지원

•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인건비 재정지원 받는 경우 제외하고 취약계층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

개정취지

•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정망 확충 및 안정자금 지원 강화
• '18년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수가에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서 지원 배제

4. '19년도 주요 개선사항

I.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

◇ 정기지급일

종 전

- 매월 10, 20일

개 정

- 매월 15일

개정취지

- 고용보험 신고내역 반영을 통한 착오지급 감소

◇ 사후관리 강화

종 전

정기점검	• 매 반기 1회 정기 지도점검, 필요시 수시 점검 실시
반환명령	• 해당 사업장에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 지원금 전액의 5배
부당이득 유형	

개 정

- 매 분기 1회 정기 지도점검, 필요시 수시 점검 실시
-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금액 전액 반환 명령
- 부정수급액의 5배
- 경비·청소원 특별 지원절차에 의해 사업주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지원금 수령한 뒤,
경비·청소원의 임금인상에 반영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취지

- 내실 있는 사업운영을 위해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대폭 강화

4. '19년도 주요 개선사항

I.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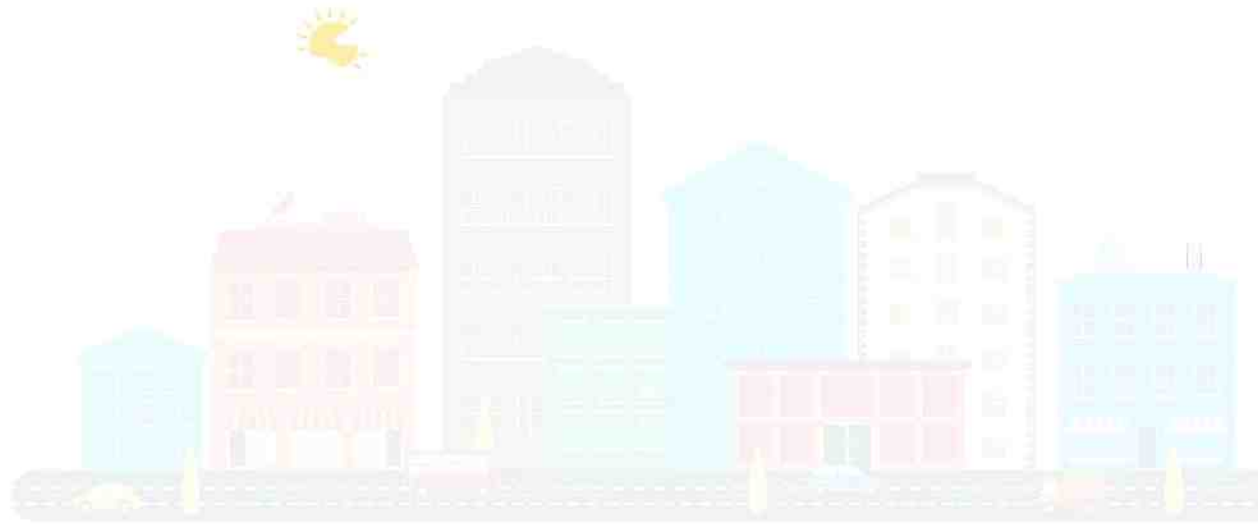
◇ 공동주택 특별지원 강화

개 정

- 지원금의 50%이상이 경비·청소원 위탁(용역)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용역업체와 추가 위탁계약이나 처우개선비용 등으로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음

개정취지

- 내용 신설 및 명문화



5. '18년도 지원 사업(주)에 대한 경과조치

I.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개요

- ❖ 2018년도말 기준 지원 사업(주)는 별도의 신규 신청서 제출 없이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 후 계속 지원
 -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2019.3.31.까지 제출
 - ➡ 기한내 미제출 사업장은 4.1.부터 지원 중단, 연도 중 제출할 경우에는 지원중단 해제하고 계속 지원
- ❖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위탁계약 유지 및 현장별 근무자 이동 등 확인 후 지급
 - 자치관리, 전문위탁업체는 최저임금 준수 및 공동주택 계약유지 확인서 2019.1.31.까지 제출
 - 용역업체는 최저임금 준수 및 공동주택 계약유지 확인서 2019.1.31.까지 제출하고, 현장 근로자 변경신고 2019.2.28.까지 제출
 - ➡ 기한내 미제출 사업장은 2019년도 지원금 지원 중단, 연도 중 제출할 경우에는 지원중단 해제하고 계속 지원
- ❖ 2018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별도 기준으로 지원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19년도에는 타 사업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

Ⅱ.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 1 사업주 신청
- 2 신청서 접수
- 3 10인 미만 사업(주) 신청 간소화



1. 사업주 신청

Ⅱ.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 신청자



30인 미만 고용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



대리인

- 신청일 당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은 신청 가능



보험사무대행기관

-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승인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신청 가능
-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인가를 받은 후 사무대행



◆ 신청시기



연중 언제든지 신청 가능, 한번 신청하면 지급을 희망하는 월부터 매월 자동 지급

- 단, 회계연도 마감 등을 고려하여 2019.12.13.(금)까지만 신청서 접수
- '19년도 사업개시 사업장은 2019.11.30.까지 성립된 사업장에 한해 신청가능
- 신규입사 근로자는 2019.12.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신청가능



신청당시 휴폐업한 사업(주)는 신청 불가

◆ 신청방식

▶ 온라인 신청 원칙

-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 3공단 및 고용보험 EDI,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전용 웹사이트

명 칭	사이트 주소	운영기관	홈페이지 문의
근로복지공단EDI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1833-6000
국민건강보험EDI	http://edi.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EDI	http://edi.nps.or.kr	국민연금공단	063-713-6565
고용보험EDI	https://www.ei.go.kr	한국고용정보원	1577-7114
KT EDI	https://bips.bizmeka.com	(주)케이티	080-318-5306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국민연금공단	063-711-7800

▶ (예외) 오프라인 신청

- 신청일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 사업장 관할 사회보험 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센터(기업지원과)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신청서식

▶ 계속 지원 사업장

-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2019. 3. 31.까지 제출**
- 공동주택은 최저임금 준수확인 및 공동주택 계약유지 확인서를 **2019.1.31.까지 제출**,
현장별 근로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를 **2019. 2. 28.까지 제출**

최저임금 준수확인서

< 일반사업장용 >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우선, 금년도 어렵고 힘든 경영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근로자 고용안정에 힘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년도에도 최저임금이 10.9%가 인상되는 등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며,

'18년도에 지원을 받고 계시는 사업(주)는 '19년도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 받기를 희망하시는 사업주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 하신 후 '19.2.28.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_____ 일자리 관리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_____]
2019년 최저임금(8,350원) 준수 여부 ☐ 예 ☐ 아니요 ☐

< 유의사항 >

- ① 동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9.4.1부터 지원이 보류됩니다.
- ② 지원대상 근로자의 2019년도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지원년도에 확정된 19년 월보수가 25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전액 환수됩니다.
- ③ 지원기간 도중 지원대상자에 대해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단 경영상 어려움 등에 대해 소명할 경우 계속 지원)
- ④ '18년 지원한 지원금에 대해 근로자 퇴사 등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9년에 지급받을 금액에서 상계(충당)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안내받고 이에 동의하며 사실과 불합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사업주)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1.1.>

일자리안정자금 상용근로자 ☐ 변경 ☐ 지원제외 신고서 (지원연도 년)

※ 해당이 미루는 부분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업종번호	업종일자	처리기간	10일
사업장	일자리관리번호	전화번호	[표준/휴대전화]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자(대표자)		주인(외국인)등록번호	
상용근로자(변경·지원제외 대상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변경(제외) 내용	
	부호	변경전	변경후
		변경일	변경(제외)사유
제출 서류	* 상기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 인적사항: 주민등록초본, 주민(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첨부하여 제출		

작성방법

[부호]

· 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업종일자 4. 일자일 5. 주소지번호 6. 주소(주소→일반근로자) 7. 검사, 단속(검사, 단속→일반근로자) 8. 경비, 청소, 여부 9. 월평균 임금(월평균 임금→일반근로자) 10. 급여지급형태 (월급, 주급, 시간급) 11. 장애급여 (변상, 인제, 착오정정) 12. 근무지이동

· 제외부호: 13. 근로자 퇴사(퇴직, 이직)에 따른 지원제외 14. 특수 근로(특수근로제외) 15. 퇴직금 수령 등으로 인한 지원제외 16. 대량이동(고용허자 등)

[변경일] 변경부호 5, 7, 9, 10, 11, 12, 13, 14, 제외부호 14, 15에 대해서는 실제로 변경되는 변경사항 발생일자(변경일)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착오정정인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4. 대상이전(고용허자 등)으로 인한 지원제외는 변경일(제외일)과 상관이 없어 해당 지원연도에 대하여 지원제외(취소) 처리됩니다.

[변경 및 제외 사유] 변경, 제외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장애급여 변경인 경우 양상, 인제, 착오정정으로 기재

작성사항

1. 신청 이후 기본급 등 보수증액,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된 내용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경되거나 환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수증액이나 근로시간 등 변경이 발생하였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연도, 확립 신고한 보수증액이 신고된 금액의 120%를 초과하게 되면 지원금(지원금)이 환수(환수)로 환수(환수)됩니다.

3. 타 지원금 수령 등으로 인한 지원제외는 제외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제외 사유 처리 됩니다.

4. 대상이전(고용허자 등)으로 인한 지원제외는 변경일(제외일)과 상관이 없어 해당 지원연도에 대하여 지원제외(취소) 처리됩니다.

담당직함 1. 주민등록초본 2. 주민등록 관련 자료

확립정보 공표여부 불변

본인은 이 신고서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신고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인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보통사무대행기관(대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 '19년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확인한 사업주
 - 근로자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신고 (취득·상실)상 월평균 보수 반영하여 자동 지원
-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근로자, 일용근로자, 공동주택은 최초신고와 동일



-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신고**
- ▶ 사업장정보 변경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
- ▶ 지원대상근로자 변동사항 고용보험 신고(취득·상실)로 같음
 - 단, 고용보험 신고내용이 아닌 경우와 적용제외사업장 및 근로자의 변경사항은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 제출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고용보험성립
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사회보험 3공단EDI, 4대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 고용센터, KT EDI에서 접수

근로내용확인신고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보험 EDI에서 접수

공동주택,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
(적용제외 사업장 및 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 변경신고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만 접수

오프라인 접수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접수

관할 소재지가 아니더라도,
오프라인 접수기관에서
전산입력 후 전송

근로복지공단 외 공동접수기관
(연금·건보공단,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 시에는 즉시 전산 입력

◇ 공동접수기관 역할 분담

근로복지공단

- 사업집행 주체로서, 관내 공동접수기관 담당자 핫라인 구축·운영
- 공동접수 상황 총괄·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및 홍보자료 배포 등
- ‘관내 공동접수기관 업무협의회’ (매분기 1회 이상)를 개최하여 업무 협업 강화
- 공동접수와 관련한 ‘특이사항’ 발생 시 협의, 조정, 상황보고 등 조치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 기존 이용자에 대한 신청서 접수와 더불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규 성립사업장 중심으로 신규 사업장 발굴(각 지사별 별도 전담자 지정·운영)
- 매 분기 다음달까지 공동접수 및 신규사업장 발굴실적을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으로 보고

고용센터

- 사업시행 주체로서, 관내 사업주에 대한 제도 홍보 및 교육, 각종 지원금 수급사업장 및 신규 구인 사업장에 대한 안정자금 지원 연계

3. 10인 미만 사업(주) 신청 간소화

Ⅱ.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 목 적

▶ 영세사업체 신청 편의 도모

-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주요한 지원요건이 동일한 점을 감안 간소한 서식 활용

- ❖ 두루누리: 10인 미만, 210만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
일자리 안정자금: 30인 미만, 210만원 이하, 고용보험 가입

❖ 대 상

▶ 신청일 기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장

- ❖ 단, 공동주택, 건설업·벌목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는 기존신청서로 제출

부담 줄! 걱정 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 10인 미만 사업(주) 신청 간소화

II.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 신청방법

▶ 대상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희망서’를 통해 안정자금을 신청

- 사업주가 희망할 경우에는 일반 신청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급을 희망하는 월부터 회계연도 종료 시 까지 자동 지급

▶ 지급희망서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온·오프라인 신청

- 연금·건보공단, 고용센터 등 공동접수기관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첩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희망서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간편하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장과 달리 동 신청서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일

※ 해당 항목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관리번호		사업장명	
지원금결정 통지방법	통지 [] E-mail [] 우편수령 방법 [] 휴대전화	지급희망월 (YYYY.MM)	
받는곳 [E-mail, 주소, 휴대전화]		정기지급일 (2회분 이후)	15일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최저임금 준수여부	☐ 예 ☐ 아니오		

□ 안내사항

- 1 지급희망월은 신청인이 최초로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월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2 귀사에서 두루누리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 3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보험료가 산정되는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자동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직접 수령 방식만 가능, 보험료 대납방식은 불가)
- 4 공동주택, 건설업·발목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적용제외근로자는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5 지급희망월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됩니다.
- 6 「유역사항」 '19년도 확정된 보수총액('20년 신고)이 210만원의 120%(252만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환수되므로 해당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7 지원금은 매월 15일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 8 지급희망월 이후 경영상 필요 해고·권고사직(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중분류 23번) 발생시 불가피한 고용조정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월 다음 달부터 전체 지원금 지원이 종료됩니다.

위 내용에 대해 안내받고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Ⅲ. 지원대상기업 심사

- 1 **요건1** 30인 미만 사업(주)일 것
- 2 **요건1-1** (예외) 취약계층 중심으로 30인 이상도 지원
- 3 **요건2** 고소득 사업주가 아닐 것
- 4 **요건3**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 5 **요건4**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 6 **요건5**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7 **요건6** 최저임금을 준수할 것
- 8 **요건7**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 지급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수 합계를 3으로 나눈
평균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일 것



상용근로자(단시간 포함)

매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 중인 피보험자

- 휴직근로자는 포함, 출산전후 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근로자는 제외



일용근로자

해당월 근로내용 신고된
일용근로자 연인원을 22.3
(일용근로자의 월간 평균
근로일수)으로 나누어
근로자수 판단



고용보험적용제외 근로자 (외국인, (3개월 미만)초단시간)

사업주 신고
(근로계약서 확인)

❖ 산정단위 원칙

▶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산정

-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을 기준으로 적용, **실무적으로** '주된 사업장관리번호' 기준으로 적용

단, 본사·지사·지회·협회·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임금·인사·노무·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별도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 적용

고용보험 적용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실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적기관 발급
대체자료 제출(예시: 고유번호증, 5인 미만 농림어업의 경우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 산정단위 예외

▶ 하나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 ① 해당 지(점)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채용·해고 등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 ②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
단위로 산정

▶ 단, 규모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 ① 지(점)사 단위로 30인 미만
- ② 고소득 사업주 요건은 해당 법인 단위로 적용하여 고소득 법인은 지원 제외
- ③ 고용보험이 별도로 성립(사업장관리번호)되어 있어야 함

지급원칙

3개월 평균 근로자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지급

- 단, '19년 신규성립사업장으로서 해당사업의 개시월부터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립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당 사업 개시월부터 지급 가능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도중 근로자수 변동(인원 증가)이 발생한 경우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퇴사자는 제외)

▶ 지원대상 근로자 선정: 지급금액(高)-월보수(低)-입사(先)-생년월일(先) 순으로 지원

- 소급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최초 지급희망월 기준 직전 3개월 (산정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희망월 전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평균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에는 이후 근로자수 변동으로 30인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29인까지 계속 지원

지원요건 충족을 위한 인위적 감원을 한 기업은 지원 제외

 대상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
대응지역 종사자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종사자

대상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주택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55세 이상 고령자

300인 미만까지 지원

- 1964.12.31. 이전출생자

대상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 대응지역 종사자

300인 미만까지 지원

- ❖ 고용위기지역 :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군 및 목포시, 군산('18.6월 현재)
- ❖ 산업위기대응지역 : 現 고용위기지역 + 전남 해남군('18.6월 현재)
- 최초 신청당시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
- 타 지역에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소재지 변경시 변경일 다음달부터 적용
- 전북지역 내 한국GM 군산공장 협력사도 동일하게 300인 미만까지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종사자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주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 (노인돌봄서비스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
 - (노인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32조에 따라 지정의제 된 기관
- 이미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
 - 하나의 시설이 사회적기업·자활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복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한도는 최대 매월 299인으로 제한

▶ 개인사업(주)

- 소득세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른 과세소득 범위 중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 법인

-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과세소득의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당기순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확인방법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



국세청에 명단 송부하여 신청사업자
또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조회



결격여부 확인

- 최초 신청 또는 재심사 시 판단하고,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합산한 과세소득 금액으로 확인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개인사업주의 경우 해당 사업주 개인(공동사업주 포함) 기준 확인



확인방법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



공개중인 사업주 명단 조회



결격여부 확인

- ▶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원기간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월부터 지원 중단(종료)

🕒 국가 및 공공기관 관련 법률 등에 따른 기관이 아닐 것

국가 및 공공기관 현황(총 852개)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52개): 18부 5처 17청 2원 5실 6위원회 등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245개): 광역 17개소, 기초 228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36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등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398개): 직영기업, 지방공사, 공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76개): 시·도 교육청, 국·공립 대학, 초·중·고등학교



확인방법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 확인



국가 및 공공기관 명단 조회



결격여부 확인

- ▶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업목적이나 지원내용이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중복지원 방지차원에서 지원 배제

❖ 배제범위

- ▶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 대다수를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 (직접지원 + 바우처)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주) 지원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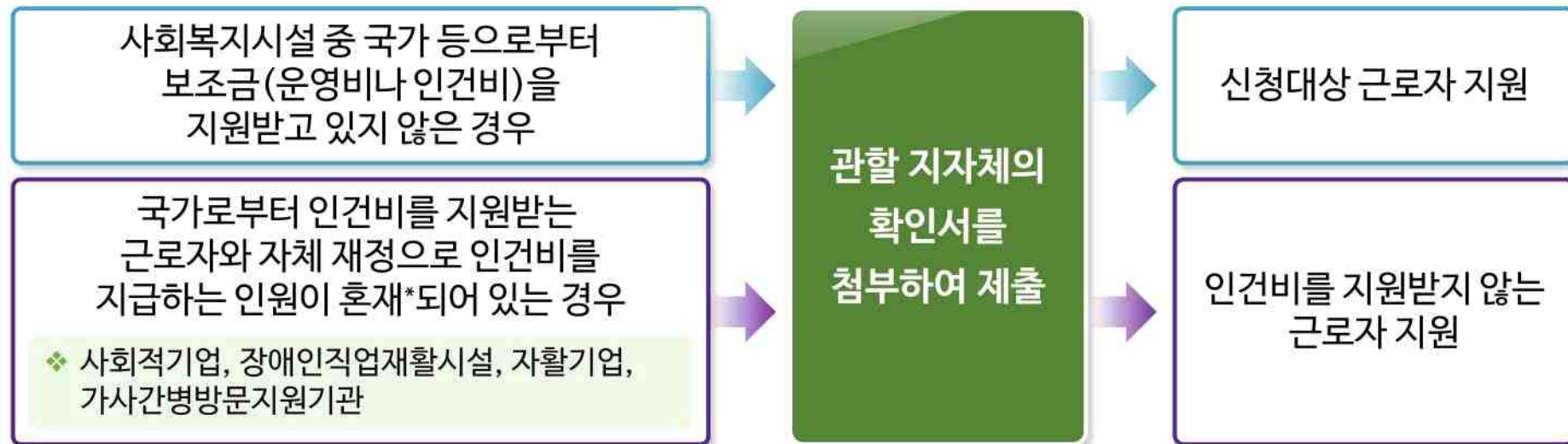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되는 사업(주)

- ① 국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 ② 정부 등이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
- ③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 ❖ 사업(주)의 주 수입원이 주로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사간병방문지원기관도 제외
- ④ 기타 위에 준하여 인건비 등 기관 운영 전체 또는 대부분의 운영예산을 자체 수익에 의하지 않고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6. **요건5**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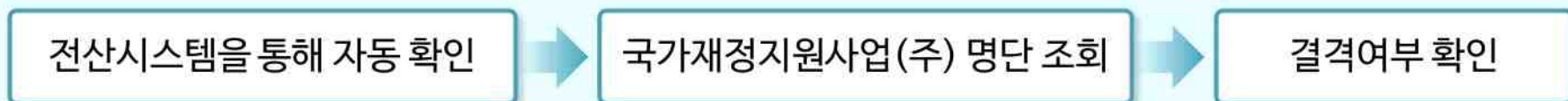
Ⅲ. 지원대상기업 심사

☑ 배제범위



✓ 회계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각 시설의 지원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2018년도에 지자체 확인서 제출 사업장은 **2019.3.31까지 확인서 추가 제출(미제출 시 4월부터 지원 중단)**

🔍 확인방법



6. **요건5**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Ⅲ. 지원대상기업 심사

◆ 노인장기요양기관

'18년도

보험수가 결정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어 지원에서 배제

수가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폭(10.9%)에 못 미침

'19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률: 4%('17) → 11.3%('18) → 5.4%('19)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18년도

지원인원만큼 차감하고 지원

제도변경

'19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

❖ (변경전) 청년 3명 고용 시 1명에 대해 연 2천만원 지원 → (변경 후) 30인 미만은 청년 1명 고용 시 1인당 연 9백만원 지원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항제3호 규정에 따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 신청일 기준으로 매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정액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 ❖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확인방법

- ▶ 최초 신청기업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을 통해 주 소정근로시간, 정액급여 기준으로 판단
- ▶ 최초 심사통과하여 지원대상이 된 기업은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 제출 (세부내역 상 최저임금 준수확인 체크로 같음)

❖ 최저임금 위반시 업무처리 방법

▶ ‘최저임금 준수여부’는 사업주 요건임(근로자 요건 아님)

최초 심사 시 최저임금
위반 근로자가 있는 경우

- ①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 대한 부지급
- ② 서류 보완(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시 재심사 후 지급

① 최초 심사를 통과하고
②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후 최저임금
위반자가 발견된 경우

- 우선 시정기한을 정해 최저임금 이상 지급토록 보완 조치,
시정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지급중단 및 기 지원된
전체 지원 금액 환수

🔍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신청월 이후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란

상실사유 중분류「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확인방법

▶ 매월 지원금 지급 전 고용보험 DB를 통해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23번 유무 확인

❖ 고용조정 확인시 업무처리 방법

▶ 피보험자격상실사유 23번 발생시 해당월 다음달부터 지급 중단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임이 소명되는 경우 계속 지급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범위

- ① 고용조정 이전 직전달(기준달)을 기준으로 기준달의 직전 3개월 평균보다 재고량이 10% 이상 증가, 생산량 5% 이상 감소, 매출액 5% 이상 감소한 경우<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범위 완화>
- ② 사업의 일부부서 또는 지원 대상 근로자의 해당업무의 폐지, 축소,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 ③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 업종전환이 있는 경우
- ④ 기타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⑤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23번 세분류 ①~⑥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기타 사업 환경이나 경영사정상 고용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IV. 지원대상근로자 심사

- 1 **요건1** 월평균 보수액 210만원 이하
- 2 **요건2**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 3 **요건3** 특수관계자 제외
- 4 **요건4** 고용보험 가입
- 5 **요건5**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19년도 지급되는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이하일 것

보수
(보험료징수법 제2조)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 급여액

보수총액
(고용·산재보험료
산정 기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

월평균보수
('19년도 월별 고용·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

연간 보수총액을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



상용근로자

-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주 40시간미만 근로자

- 주 소정근로시간과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정액 급여가 최저임금의 100% (8,350원) 이상 120% (10,020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



일용 근로자

- 1일 기준 97,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
- ❖ 건설일용근로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확인방법
**상용근로자,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 ① 신청서상 기재된 월평균 보수 확인
- ② 전년도(또는 전전년도) 보수총액신고 내역 확인


일용근로자

- 근로내용확인신고서의 일당 (=월 보수 ÷ 월 근로일수) 으로 확인
- 월 보수 및 월 근로일수는 매월 1일 ~ 말일 단위로 산정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자(외국인,
(3개월 미만)초단시간,
5인 미만 농림어업 등)**

-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보수내역 확인
(근로계약서 추가 첨부)



**유의사항**

- ▶ 신청 이후 기본급 인상, 소정근로시간 변경 등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하여 월평균보수가 210만원을 명백히 넘을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변경사유가 발생한 다음달부터 지원 중단

- ▶ 사업주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일괄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 환수 조치 예정
 - 1차적으로 보수총액을 확정 신고한 사업주는 신고된 보수총액으로,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주는 국세청 근로소득 신고금액을 통해 사후 모니터링(정산) 실시
 - 다음연도에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의 120% 수준인 25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전액 환수



유의사항

- ▶ 월평균보수는 '과세소득' 기준으로 '비과세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사업주 신청 시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신청하도록 안내 철저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

- ① 생산직 및 관련직, 일부 서비스, 판매, 경비·청소 등 단순노무직이 받는 연장근로수당
(월 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연 240만원 한도
 - (기존)생산직 및 관련직, 일부 서비스, 판매, 경비·청소 등 단순노무직 종사자 → (개정) 돌봄·미용·숙박시설 종사자 추가
- ②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아래 급여
 - 일·숙직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월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광산근로자가 받는 임궐수당 또는 발파수당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방송·뉴스·신문사 등의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
 -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③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경조사금액
- ④ 출산·6세 이하의 자녀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등
 - ✓ 실제 월보수가 2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위 비과세 수당을 제외하고 21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

▶ 상용직·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1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반드시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시점에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것임
- 신청 시 퇴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퇴사자도 포함

▶ 일용근로자: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월 이상 근무로 간주 (1개월은 매월 초일~말일임)



확인방법

- ▶ 상용·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DB연계를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 ▶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내역 연계를 통해 전산시스템으로 확인
- ▶ 고용보험 적용제외(5인 미만 농림어업, 외국인, (3개월 미만)초단시간): e-나라도움(건강보험DB)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민법 제768조에 따른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아들, 딸, (외)손자, (외)증손, 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등)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지원 제외



확인방법

- ▶ ① e-나라도움시스템(행안부 주민등록자료)을 통해 지급 전 사전 확인
- ▶ ② 지급 후 e-나라도움시스템(대법원 가족관계증명원)을 통해 사후 재확인

❖ 위반시 처리 방법

- ▶ 사후확인을 통해 특수 관계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부지급 (동 근로자에 대해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

❖ 다만, 근무사실이 없거나, 임금지급내역이 없음에도 사업주가 지원금 수령을 위해 급여대장 등을 허위 조작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사업주에게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치)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 가입 원칙

- 고용보험 적용제외자(합법 외국인, (3개월 미만)초단시간)와 적용제외 사업장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도 지원

❖ 처리방법

▶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고용보험 미취득근로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제출

지원금 지원

▶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5인 미만 농림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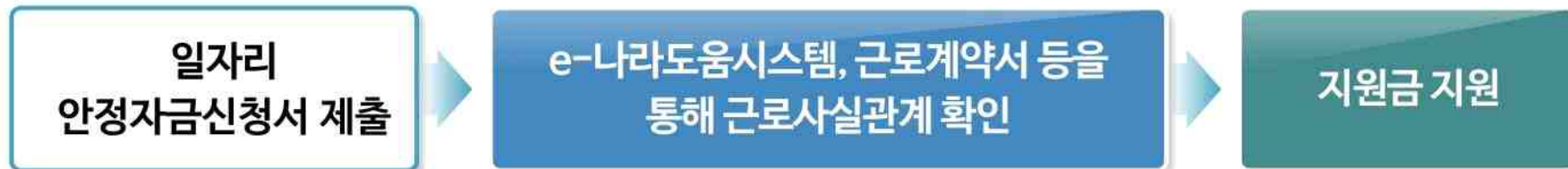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적용제외
사업장 확인

지원금 지원

❑ 처리방법

▶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합법외국인, (3개월 미만)초단시간근로자)



- 외국인의 경우, 합법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총 24종) 중 고용보험법상 임의가입이 허용되어 있는 체류자격을 지원하되, 지원대상 사업장에 사회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 등)이 가입된 경우에만 지원

▶ C-4(단기 취업) 중 외국인계절근로자



- 단기취업(C-4)는 원칙적으로 지원 배제하되, 농림·어업분야의 어려운 경영상황을 감안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원
- 신청서 수시 접수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계약기간(최대 90일) 종료 후 퇴사자용 서식으로 일괄 신청

- ▶ 지급 대상 근로자 중 '19.1.1.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인 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의 보수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확인방법

- ▶ '19년도에 최초 신규 신청사업장에 대해서만 심사
 - '18년부터 계속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이면서, '19년도 최저임금 준수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심사하지 않음(정기지급 시에는 심사항목에 포함하지 않음)
- ▶ 고용보험 DB에 신고된 월평균보수 확인
 - '19.1월~4월까지의 전전년도 월평균보수, '19.5월부터 전년도 월평균보수 확인
 - '18.10월 이후 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
(정기급여 외 상여금, 성과급 및 각종 수당 등이 연말 집중되어 월평균보수가 왜곡될 소지 배제)

❖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의무 예외 인정

-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근로 축소, 연차사용 촉진 등 정당한 사유*로 전년도 보수수준보다 낮아질 경우
 ➔ ‘보수수준 유지 확인서’를 제출시에는 예외 인정

❖ 기본급이나 고정수당을 임의적으로 삭감하지 않고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연장근로 축소, 연차사용 촉진, 경영악화에 따른 변동 상여금의 감소 등



보수수준 유지 확인서

보수수준 유지 확인서			
☐ 일자리 안정자금은 '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노동자에 대해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임의적으로 임금(기본급이나 고정수당)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등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아래 사유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명		고용보험관리번호 (일자리관리 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년도 보수보다 금년 보수가 낮아진 사유			해당사항 체크
☐ 근로시간 단축, 생산물량 감소 등에 의한 연장수당 감소			☐
☐ 경영사정 등에 의한 변동 상여금 등 변동적 임금의 감소			☐
☐ 연차휴가 사용 촉진 등에 따른 보수총액 감소			☐
☐ 기타 경영사정으로 인해 노·사 합의, 개별근로자와 동의 등을 통해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음			☐
위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사업주)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V.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 1 지급결정
- 2 지급액 산정
- 3 지급



1. 지급결정

V.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 지급시 확인 사항 **최초지급**

➤ 지원대상 기업,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을 모두 확인 후 지급여부를 결정

1차 심사

고용보험 DB

30인 미만, 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기관,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사업장 정상운영

2차 심사

e-나라도움 시스템

실명확인, 고소득 사업주,
재정지원 사업주, 특수관계인,
외국인 등 체류여부

2. 지급액 산정

V.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 상용 근로자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정액 지급

①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일에 비례하여 지급(원단위 절사)

[산식: 지원액 = 지원금(13만원) × (근무일수/해당 월일수)]

❖ 근무일수	입사	입사일부터 말일까지 일수
	퇴사·휴직	해당월 초일부터 퇴사(휴직)일까지 일수

② 외국인근로자 등 적용제외 근로자가 고국방문 등으로 휴직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휴직기간이 월 중간에 걸친 경우, 고용유지 확인서상 매월 지급한 월보수가 기 신고한 금액의 50% 미만인 경우 기 신고 월 보수에 비례하여 지원금 지급(10원 단위 절사)

[비례지급 방식: 당초 지원금 × (고용유지확인서상 월보수/최초 신고 월보수)]

☑ 주 40시간미만 근로자

▶ 적정구간을 설정, 근로시간에 비례 지급

➤ '18년도 계속지원사업은 '18년 월평균보수 기준, '19년 신규입사자 등은 '19년 월평균보수 적용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월 지급액
'17년 월평균보수	'18년 월평균보수	'19년 월평균보수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674,720원 이상~1,352,230원 미만)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785,250원 이상~1,573,770원 미만)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876,750원 이상~1,745,150원 미만)	120,000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281,130원 이상~674,720원 미만)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327,190원 이상~785,250원 미만)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362,820원 이상~876,750원 미만)	90,000원
10시간 미만 (284,680원 미만)	10시간 미만 (327,190원 미만)	10시간 미만 (362,820원 미만)	60,000원

➤ '19년 3월분까지는 기 신고된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4월분부터는 '18년 확정 보수총액 신고 내역을 반영하여 지원 금액을 산정

➤ 지원대상자가 월중 입·퇴사, 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산식: 지원액 = 구간별 지원액 × (근무일수/해당월 일수)]

- 지원대상자 중 '육아휴직' 등 개인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실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해당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13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120,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100,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80,000원

- 일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8시간 대비 일평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지급액을 산정



ex) 22일 이상인 경우: $130,000 \times \text{일평균 근로시간} \div 8$

- 일평균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에는 8시간으로 계산

❖ 5인 미만 사업장 추가 지원

▶ 추가지원 금액 : 기존 금액 + 2만원

- 월중 입·퇴사자의 경우에는 추가지원 금액까지 포함해서 일할 계산

▶ 5인 미만 판단 기준

- 지원월을 포함한 직전 3개월간 말일 기준 평균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어야 함
- 최초 또는 매월 정기지급 전 지원월을 포함한 직전 3개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추가지원 또는 일반지원 여부를 판단(결정)



ex) '19.1월분 지급시' 18.11~'19.1월 근로자수 산정 후 2월에 1월분 추가지급 or 일반지급 결정 후 지급
(이후 순차적으로 1개월씩 순연하여 확인)

- 근로자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 안정자금 신청 적용제외자수를 기준으로 판단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추가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 시기에 상관없이 해당 사업주와 근로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희망월부터 소급하여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취지임을 반영
(일용근로자는 고용이 일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월 10일 이상 실 근무한 달만 소급 지원)

▶ 신청 당시 휴, 폐업한 사업체까지 소급하여 지원하는 것은 아님



VI. 일자리 안정자금 이의신청

1 이의신청 개요

2 이의신청 업무절차



1. 이의신청 개요

Ⅶ. 일자리 안정자금 이의신청

❖ 이의신청 업무 프로세스

소속 기관장	• 지급(부지급) 결정통지
사업주 (20일 이내)	•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 소속기관장에게 이의 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기한: 2019.11.30.
소속 기관장 (5일 이내)	• 수용가능 이의신청: 소속기관 자체 결정 취소 및 신청인 통지 • 수용불가 이의신청: 의견서 첨부, 관할 심사위원회에 송부(5일이내)
관할 지역본부 (20일 이내)	•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신청인 및 소속기관장 각각 통지)
사업주	• 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 이의제기는 민사(소송) 등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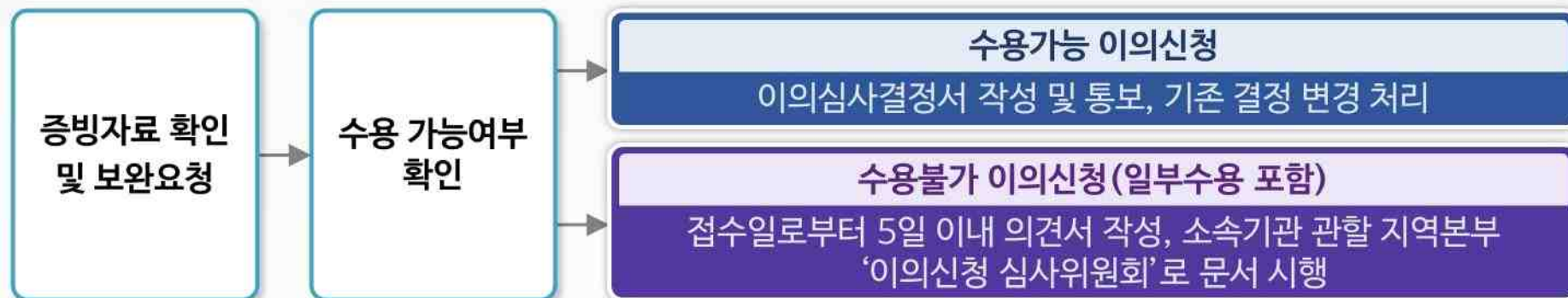
❖ 공단 이의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 이의제기는 민사(소송) 등 절차에 따름

➤ 이의신청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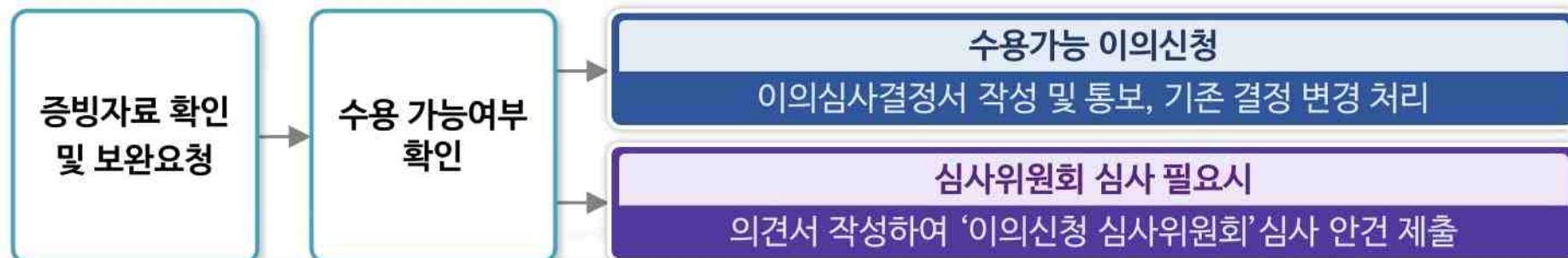
- 지원비대상 결정, 지원금 부지급(일부 부지급 포함) 결정, 지원중단 결정, 지원종료 결정, 부정수급 반환명령 및 납입고지, 부당이득 환수결정 및 지원금 상계, 부당이득 반환명령 및 납입고지

❖ 소속기관에서 행한 이의신청

- 지원요건 1차, 2차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부적격 사유 소명자료 제출되어 재심사 가능여부 확인



❖ 지역본부에서 행한 이의신청



VI. 사후관리

- 1 사후관리
- 2 부정수급
- 3 부당이득



◇ 지원대상 기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 분	내 용	모니터링 자료
최초 지급결정 이후 2차분 지급 전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 근로자수 변동 • 사업장 변동(휴·폐업, 대표자, 소재지 변경 등) • 지원 대상 근로자 고용조정(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등) 발생 유무 • 육아휴직 등 발생 여부 • 국가 등 재정지원 사업 지원 여부	고용보험DB 국세청 e-나라도움
매분기 (또는 반기)	• 특수 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 국가 등 재정지원 여부 • 대상 기업 임금체불 발생 여부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현황 • '19년 신규사업장에 대한 기존 사업장과의 중복 유무 (사업장 쪼개기 방지 차원) • 공동주택 청소·경비원 여부 확인	e-나라도움(대법원) e-나라도움 일모아시스템 노사누리 고용보험DB
차년도	• 월평균 보수 210만원 초과 지급 여부 ❖ '19년도 확정된 월평균 보수 확인 차원	고용보험DB 국세청

❖ 사후관리 운영강화

정기 점검



- 원칙적으로 매 분기 1회 정기 지도점검, 필요시 수시 점검 실시
-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 유도 등을 위해 정기 지도점검 전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자진신고 사업주가 수령한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되, 제재부가금 부과는 면제

수시(특별) 점검



- 정기점검 외 지원금 관련 제보, 언론에서 문제 제기한 사업장, 노·사가 담합하여 허위수령이 의심되는 사업장이 발생하는 등 점검 필요성이 있을 경우

❖ 사후관리 운영강화

정기·수시 점검 시 유의 및 조치사항

- ① 원칙적으로 **점검일 3일 전까지** 해당 사업장에 점검 내용 등 **공문으로 고지**하되, 긴급히 점검이 필요한 경우나, 불시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 장소에서 공문으로 사유 및 취지 설명
- ② **지원금 신청 및 수급과 관련하여 관련 서류 및 장부의 열람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음
- ③ 언론·국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와 협의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④ 자체 점검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함

❖ 부정수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1호)

유형 1 거짓 신고,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제출 등

- 거짓 신고를 통한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등을 위한 증빙서류의 거짓 작성·제출

유형 2 노·사가 담합하여 인위적으로 지원요건을 충족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기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번호를 달리하여 사업장 분할 설립, 실 급여내역 조작, 실 근로일수 등을 조작하여 지원금 신청

유형 3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장이 부정수급행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정수급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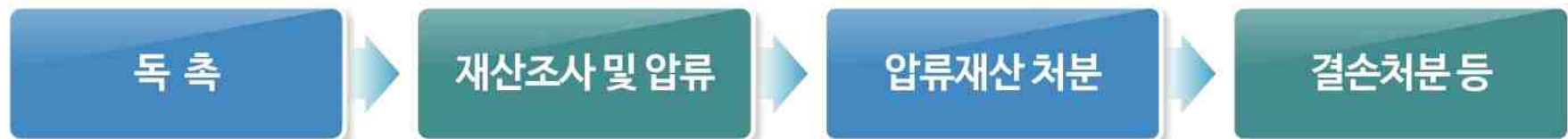
▶ 반환명령

- 공단은보조금 수령자에 대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정된 금액 전액 반환 명령



▶ 강제징수(관할 지방노동관서)

-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는 기한 내 미납입시 공단에서 부과한 징수금액에 대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 부정수급 처분

▶ 제재부가금 징수

-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제재부가금' 추가 부과
- 고용노동부(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 환수금 등 분할납부

-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징수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기업의 경영사정 등으로 일시납이 곤란한 경우 사업주의 납부능력 등을 고려하여 6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가능

❖ 부정수급 처분

▶ 형사고발

- 보조금 수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 부정수급액이 발생한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와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부정수급 의도가 뚜렷한 경우로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장이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장이 고발사유 발생 시 즉시 고발

▶ 지급제한

-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에 추가하여 동 사업종료 시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제한

❖ 환수처리 절차

▶ 환수단계



1 환수대상 확인

- 공단본부에서 부정수급 온라인 신고센터 제보 및 소속기관 인지사건 접수 및 확인

2 기초조사

- 신고인 조사(문답조사 등), 지원금 심사자료, 사업장 신고자료, 유관기관 자료 등 기초 분석 및 혐의점 확인을 위한 자료 확보
- 혐의가 없을 경우 : 공단본부 내부종결, 혐의가 있을 경우 : 소속기관 실지조사 지시

❖ 환수처리 절차

③ 실지조사



④ (사전) 환수결정 및 사전통지

- 실지조사 결과 혐의가 명백한 경우 (사전)환수결정, 사전환수통지서 및 의견서 발송

❖ 부당이득

🕒 **법률상의 원인없이 부당하게 재산적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실을 주는 일 또는 그 이득(민법 제741조)**

유형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아닌 신청인의 착오, 지연신고, 담당자 착오 등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입·퇴사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연으로 퇴사 기간 중 지원금 지급
- 월평균보수변경신고 지연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 기타, 신청인의 착오, 지연신고,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 담당자의 지원금 지급계산 착오로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 경우

유형 2

경비원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지급절차에 의해 사업주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지원금을 수령한 뒤, 경비 청소원의 임금 인상액 전액 반영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부당이득 처분

▶ 환수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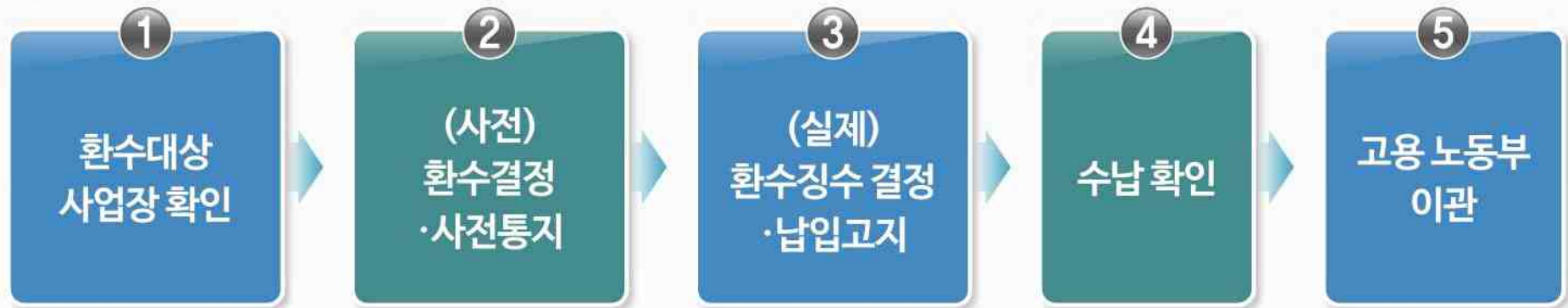
- 환수사유가 발생한 지원대상 인원에 대해 착오 지급된 지원금 환수결정
(환수사유가 발생한 해당월 지원금부터 환수)
 - ❖ 해당 사업장에 지원된 지원금 전체 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환수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별로 착오 지급된 금액만 환수
- 해당 사업장에 지원할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지원금에서 차감하고 지급
- 지급할 금액이 없는 경우, 부정수급 환수 및 처리절차와 동일하게 처리

▶ 환수결정 제외

- 사업주별 월 단위 환수 대상금액이 1만원 미만(1인 기준 7.7%)인 경우 환수결정 대상에서 제외
(부당이득금에 한함)

❖ 환수처리 절차

➤ 환수단계



1 환수대상 사업장 확인

- 지원요건(사업주요건, 근로자요건) 미충족 확인하여 환수대상 사업장 명단 추출 및 소속기관 송부

2 (사전)환수결정 및 사전통지

- 대상 사업장에 대해 (사전)환수결정, 사전환수통지서 및 의견서 발송
- 의견서 제출 기한내 소속기관으로 제출된 의견서 내용 타당한 경우 환수결정취소 처리

VII. 공동주택의 이해

- 1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근로관계 특성
- 2 지원대상
- 3 지원금 특별지원 절차 및 내용
- 4 공동주택 일자리관리번호
다중생성 원인 및 유의사항



1.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의 근로관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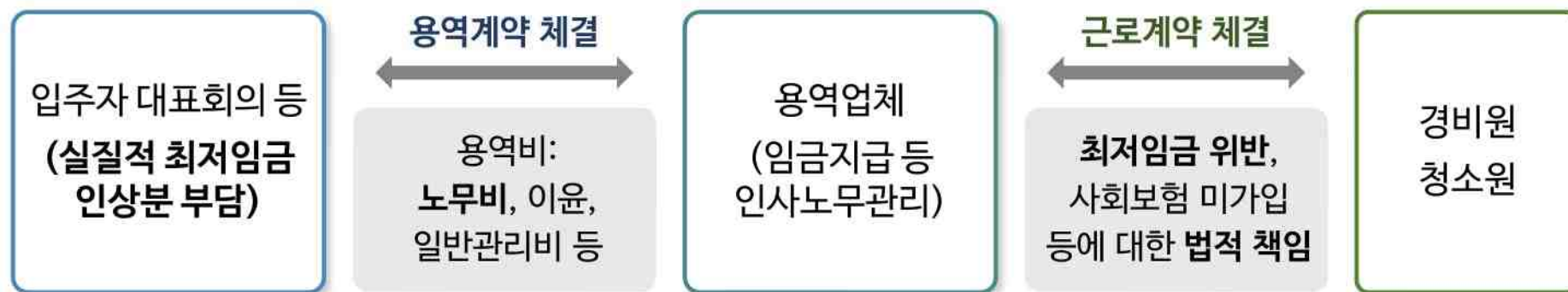
VIII. 공동주택의 이해

❖ 시설주 등이 경비·청소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용역업체 외주로 운영

➤ 경비원(아파트 경비원 등)의 약 90%가 용역업체 소속으로 추정(국토부)

❖ 입주자대표회의(시설주) 등이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 고용주는 경비·청소원을 고용한 용역업체로서,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등 고용주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나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실질적 부담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시설주) 등임



❖ 공동주택* 사업 규모가 30인 미만인 경우 직종에 상관없이 지원 대상 근로자 전부 지원

❖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및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 예외: 사업 규모가 30인 이상인 경우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만 지원



❖ 사업규모 판단

➤ 원칙적으로 일반사업장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적용단위'로 함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

각 사업(공동주택)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적용단위
(공동주택)별로
30인 여부 판단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전문주택관리업체가 아닌
일반 용역회사에 경비·청소원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해당 용역업체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적용단위
(용역업체)별로
30인 여부 판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직접 경비·청소원을
고용하여 자치 관리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별로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적용단위
(공동주택)별로
30인 여부 판단



사례별 지원대상 판단 사례

사업주	전체 사업장수	총상시 근로자	지원신청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지원대상 판단
			소 계	사 무	시설관리	경비청소	
A (자치기구)	1	25	25	5	10	10	전체 근로자 지원가능
B (자치기구)	1	35	35	10	10	15	경비청소원만 지원가능
C (주택관리업자)	1	30	30	10	10	10	경비청소원만 지원가능
D (주택관리업자)	1	20	20	5	5	10	전체 근로자 지원가능
E (전문용역업체)	2	25	15		5	10	전체 근로자 지원가능
F (전문용역업체)	10	100	30			30	경비청소원만 지원가능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공동주택)별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3. 지원금 특별지원 절차 및 내용

◆ 신청 및 지급 주체

- ▶ 원칙적으로 신청은 사업주가 하되, 위탁업체(용역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경비·청소원을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
- ▶ 용역(위탁)업체 소속 근로자 중 경비·청소원이 아닌 경우(시설장비·조경 등)에도 동일한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우, 실질적 임금 부담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등 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관리유형	관리방식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주체
자치관리 (직영)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직접 경비·청소원을 고용하여 관리	• (신청)입주자대표회의 • (지급)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 (용역위탁)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청소 등 위탁관리	• (신청)위탁업체 • (지급)입주자대표회의 등
분리 위탁관리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 여러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청소, 시설·장비 등 분리 위탁	• (신청)각 위탁업체별 • (지급)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치관리 + 위탁관리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일부는 직접고용하고, 일부는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	• (신청)입주자대표회의 + 위탁업체 • (지급)입주자대표회의 등

3. 지원금 특별지원 절차 및 내용

VIII. 공동주택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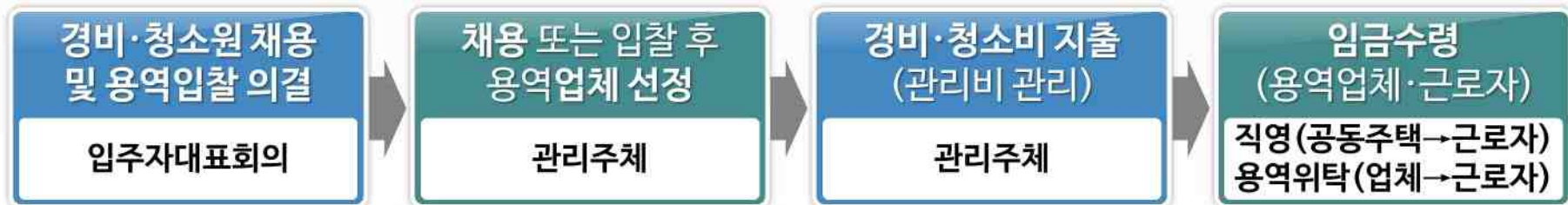
◆ 신청 및 지급 주체

- ▶ 다만, 공동주택별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유무, 관리비 관리주체 등이 상이하하여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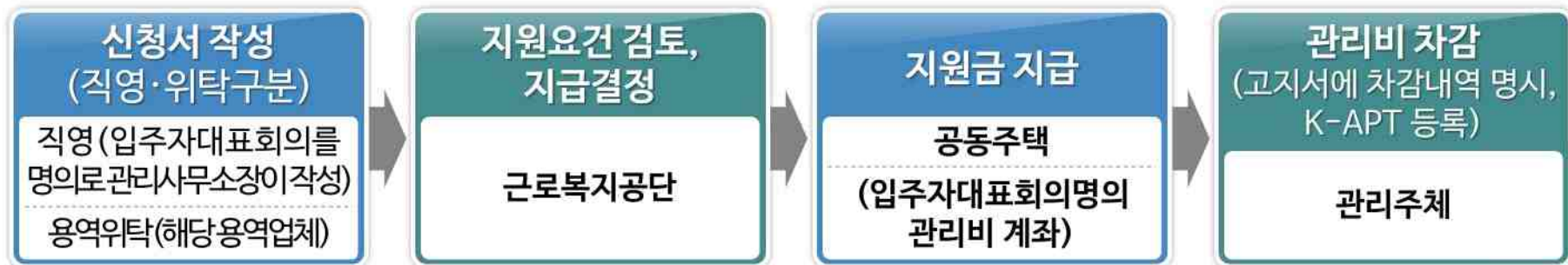
유형1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승강기·중앙집중난방 설치 150세대 이상)

〈업무프로세스〉



〈지원금 지급절차〉



➡ 해당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관리비 계좌

3. 지원금 특별지원 절차 및 내용

VIII. 공동주택의 이해

◆ 신청 및 지급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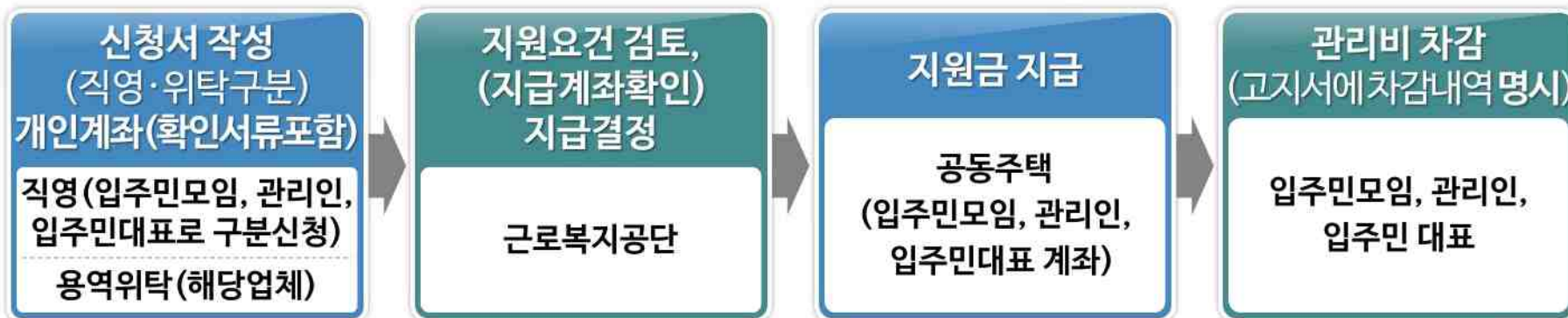
유형2

공동주택관리법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 승강기·중앙집중난방 설치 150세대 미만)

〈업무프로세스〉



〈지원금 지급절차〉



➔ 입주민모임 또는 관리인, 입주민대표의 계좌(입주민대표 등의 협약서 제출)

3. 지원금 특별지원 절차 및 내용

VIII. 공동주택의 이해

◆ 신청 및 지급 주체

유형3

공공·민간 임대주택

(주택관리공단, 지방공사,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

〈업무프로세스〉



〈지원금 지급절차〉



➡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관리 계좌(관리사무소장 명의 협약서 제출)

3. 지원금 특별지원 절차 및 내용

VIII. 공동주택의 이해

❖ 제출서류

-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 등)와 위탁업체 간 지원금 신청 및 수령에 관한 표준협약서 제출(필수)
 - 표준협약서에 지원금 신청내역 기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확인

❖ 신청방법

- ▶ 신청주체와 지원금 수령주체가 다른 점 등 특수성을 감안, 공동주택 관련 신청서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
 -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등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 오프라인 접수(사회보험 3공단, 고용센터에서 접수 시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서류 이송 처리)
 - ❖ ①고용보험 취득신고나 월평균보수변경신고서 ②일자리 안정자금 세부내역(공동주택용) 서식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에 유의
- ▶ 용역업체가 2개 이상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 공동주택별로 지원 대상 근로자 및 지급대상 입주자대표회의 계좌 구분 기재
- ▶ 30인 이상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지원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비·청소원 여부를 신청서식에 체크

3. 지원금 특별지원 절차 및 내용

VIII. 공동주택의 이해



유의사항

▶ 경비·청소원 고용안정을 위해 법상 사용자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지원금을 특별히 지원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 필요

- ▶ 공동주택 경비·청소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금을 지급받게 됨에 따라 사업주요건과 무관하게 지급, 해당 근로자의 지급요건은 동일하게 심사
 - 단, 지원금을 지급받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해 지원대상자에 대한 고용유지 의무를 부과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피보험자격상실코드 23번) 시 지원 종료(자발적 퇴직, 위탁업체 변경 등은 무관하게 지원)
- ▶ 공동주택 경비·청소를 제외하고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사업장 및 근로자 요건을 동일하게 심사
- ▶ 지원대상자 근무지 이동, 근무조건 변경 시 반드시 신청주체인 용역업체 등에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월 자동 지급 전 고용보험DB를 통해 고용유지여부 반드시 확인

3. 지원금 특별지원 절차 및 내용

VIII. 공동주택의 이해



유의사항

- ▶ 공동주택 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책임 발생 시에는 보조금법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에게 반환책임이 있음
- ▶ 지원받은 지원금은 경비·청소원 등의 임금인상이나 처우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고, 입주민들이 부담한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관리
 - 지원금의 50% 이상이 경비·청소원 위탁(용역)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용역업체와 추가 위탁계약이나 처우개선비용 등으로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지원된 지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지원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음

❖ 원 인

▶ 공동주택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접수 및 처리시 고용보험 관리번호와 같은 기준값이 없어 일자리관리번호 다중 생성

- 용역업체 고용보험 관리번호(1개)에 파견 현장별 일자리관리번호가 생성되어 고용보험 관리번호와 현장 일자리관리번호가 1대1 매치되지 않음

❖ 다중생성 유형

사 례 1

Z아파트 2월 근로자 A,B 신고, 3월 근로자 C 추가 신고시 Z아파트 일자리관리번호 각각 생성 및 지급(Z아파트 일자리관리번호 2개 생성, 이중지급은 아님)

사 례 2

Y아파트 같은 날, 이중 접수 Y아파트 일자리관리번호 이중 생성 및 이중지급

사 례 3

X아파트 2월 근로자 A,B,C 3명 390,000원 (1월분 △△1 관리번호생성 및 지급)
X아파트 3월 근로자 A,B,C 3명 780,000원 (1,2월분 △△2 관리번호생성 및 지급)

사 례 4

공동주택 근로자를 아파트 일자리관리번호 생성 없이, 용역업체 일자리관리번호로 접수하여 아파트가 아닌 용역업체에 임금. 이후 다시 아파트 일자리관리번호로 새로 접수하여 처리

진행경과

- ▶ 아파트의 정상일자리관리번호와 정리대상일자리관리번호 구분하여, 정리대상일자리관리번호로 신규근로자의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조치 완료

사례1

정리대상일자리관리번호에서 정상일자리관리번호로 근무지이동 처리 완료

사례2,3

정리대상일자리관리번호에서 지급된 지원금 사업장 환수처리 중

사례4

용역업체에 환수처리 중



유의사항

- ▶ 공동주택의 지원금 신청은 용역회사가 지급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고, 지급받은 지원금은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섞여 있어 처리시 주의 필요
 - 지원신청서(화면번호 2.1.3) 처리시 일자리관리번호 찾기에서 아파트일자리관리번호를 찾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자리안정지원시스템(화면번호 2.7.3) 공동주택 일자리 신청내역 조회 화면에서 확인

Ⅳ. 영세사업주 사회보험료 지원강화

- 1 영세사업주 사회안전망 강화
- 2 사회보험료 경감 지원 혜택



- ▶ '18년도에 이어 영세 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최저임금 인상혜택과 더불어 사회안전망 강화

❖ 사회보험료(두루누리) 지원 강화

- ▶ 10인 미만 사업체, 월보수 210만원 미만 노동자의 고용·국민연금의 사업주와 노동자 부담 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
- 신규가입자 (1~4인 사업장) 90%, (5~9인 사업장) 80%
 - 기존가입자 40%

❖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확대

-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 취득한 경우 건강보험료 최대 60% 경감
- '19년도 신규가입자 (5인 미만 사업장) 60%,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 50%
 - '18년도 가입자 30%

❖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 ▶ 1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고용증가인원(신규채용+최저임금 100~120% 수준 기존재직자 사회보험 가입)의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예시〉 5인 미만 사업체, 월 보수 175만원(최저임금 100%) 노동자 기준, 산재보험 제외

- ▶ '19년 기준 노동자당 사업주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경감 前 15.5만원에서 최대 경감 後 1.7만원으로 감소 (△13.8만원)

(단위: 원)

	합 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험료율(%)	8.9	0.9	4.5	3.5
경감 前 월보험료	155,290	15,700	78,520	61,070
경감방안	두루누리 지원 강화	14,130	70,660	
	건보료 감면			36,640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780	3,930	12,210
	합 계	14,910	74,590	48,850
경감 後 월보험료	16,940	790	3,930	12,220

감사합니다

